

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20일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「주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('21. 1. 24. 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「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「품질검수단」을 「품질점검단」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명칭으로 정비(제목 및 조례전문)
- 품질점검단의 구성 정비(안 제3조)
-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정비(안 제4조)
- 품질점검단의 점검방법 및 점검시기·절차를 명확히 함(안 제5조, 제6조)

-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신설(안 제7조)
- 품질점검단의 운영에 관한 임기, 제척, 회피 등을 정함(안 제8조, 제9조)
- 품질점검단의 자료요구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0조)
- 품질검수단이 업무수행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정함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24일 「주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「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제목 및 조례전문에 「품질검수단」을 「품질점검단」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명칭으로 변경하였고,
 - 안 제3조는 품질점검단의 구성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,
 - 안 제4조에서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을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였고,
 -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품질점검단의 점검방법, 점검시기·절차, 점검결과·조치 사항을 신설하였으며,
 - 안 제8조, 제9조는 품질점검단의 임기, 위원의 제척·회피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,

- 안 제10조에서는 품질점검단의 관련자료 요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서는 업무수행 중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고 있음.

○ 이 개정조례안은 「주택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. 끝.